

# 朝鮮王朝 世宗의 服飾政策

—世宗 八年 『官服之制』의 制定動機와 그 實施 如否—

李 相 恩\*

##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Dress and Clothing of Se-Jong in the Yi Dynasty

Sang Eun, Lee

目 次	
I. 序 論	1. 王政統治와 그 表象的 儀章으로서의 冠服
II. 爲政階級과 色彩觀	2. 世宗 八年 『官服之制』를 制定한 動機와 그 實施 如否
III. 支配階級 服飾의 構造	

###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3rd Tae-Jong and 4th Se-Jong, Yi Dynasty has established sound basis for ruling power and aristocratic social cast system.

And the regulation for official dress has also been firmly establish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establishment of KWAN BOK SACK (Office of Hat-Dress) in 16th year of Tae-Jong (1416 A.D.) and the enforcement of KWAN BOK JI JAE (System of Hat and Dress) in 8th year of Se-Jong(1426 A.D) indicates the completion of system of official dress in the dynasty.

In this study,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the concept of color in the ruling society since the concept of color in KWAN BOK JI JAE, which is the social regulation in the fental dynasty, had greatly been influenced by these class of people.

Effort has also been given to investigate what motivated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KWAN BOK JI JAE, through the descriptions revealed in SE-JONG SILLOK.

It can be concluded in the first that, in KWAN BOK JI JAE no new color concept appeared and its significance only remains on the fact that it established the social regulations which were existed before.

And secondly, the works of Se-Jong in KWAN BOK JI JAE, in contrast to his magnificence in other fields, only showed great influence of toadyism (Chinese culture).

\* 漢陽大學校 衣類織物學科 講師

## I. 序 論

朝鮮 初期의 太宗과 世宗은 李朝禮制를 確立함에 있어 特히 朝鮮王朝가 樹立된 후 支配階級の 威儀를 表示하는 官僚의 章服을 制定함에 있어서 絶對的인 位置에 서는 것이다.

太宗은 同王 十年 八月에 國初의 여러 儀禮에 대한 整備를 위하여 「儀禮詳定所」를 두어 領議政府事 河崙과 藝文館 提學 卞季良과 參知議政府事 李焄 등을 提調로 하여 이에 힘쓰게 하는 한편<sup>(1)</sup> 광범위한 儀禮詳定 가운데서도 冠服에 대한 것이 한층 重要하기 때문에 同王 十六年 正月에는 별도로 獨立機構인 「冠服色」을 設置하여 禮曹判書 趙庸과 藝文館 提學 許稠를 提調로 하여 이를 主宰케 하여 百官의 朝·祭服制度를 商確케 하였고,<sup>(2)</sup> 이러한 百官의 朝服, 祭服, 公服, 常服의 制는 世宗 八年 二月 『冠服之制』의 制定을 통하여 完成을 보게 된 것이다.<sup>(3)</sup>

위와 같이 朝鮮 初期에 制定된 官僚의 章服은 그후 時代에 따라 多少의 變貌가 있었지만 朝鮮 王朝 五百餘年의 支配期間을 통하여 基本的 形態를 이루었던만큼 朝鮮 初期의 官僚章服의 制定過程에 관한 考察이야말로 朝鮮官僚章服의 研究에 있어 先決的인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時代의 服飾에 관한 研究는 遺物이 現存하지 아니하여 文獻上의 局限된 研究를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文獻上의 研究에 있어서는 단순히 服飾의 形態研究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服飾政策과 그에 따르는 施行過程은 물론 服飾에 관련된 思想面도 重視하여 보다

精密하고 體系的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世宗의 服飾政策 중 먼저 百官章服의 完成을 본 世宗 八年 二月의 『冠服之制』를 論함에 있어 그 당시 支配階級の 色彩觀과 위 『冠服之制』의 制定動機와 實施 如否를 밝히고, 다음 機會에 世宗 十九年 九月 禮曹參判 李滄의 賀聖節使行에서 밝혀진 賚去事目의 具體的 分析과 그에 따른 諸般 論議 및 世宗 二十五年부터 世宗 末期에 이르기까지의 冠服賜與問題와 그 事大性의 深化過程을 究明하고자 한다.

## II. 爲政階級과 色彩觀

叙上한 바와 같이 太宗은 同王 十六年(1416) 正月에 新王朝가 樹立된 후 처음으로 官僚章服을 制定하기 위하여 「冠服色」을 設置하여 同年 三月에 百官의 祭服을 完成하고, 同年 十一月에 太宗이 明帝에 대한 望闕賀禮를 거행하였을 때 百官들이 비로소 祭服을 着用하고 이에 參禮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sup>.

그후 1년이 지난 太宗十七年(1416) 六月 二十七日에 王廷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即 禮曹判書인 卞季良이 紅色물을 들인 옷을 입는 것을 禁하자고 國王에게 請한 것이다. 이 紅染衣를 禁하자는 것은 從前에는 없었던 것이다.

太宗 即位 이래 十六年까지 禁止된 衣服의 色彩는

ㄱ) 黃色<sup>(6)</sup>

ㄴ) 白色<sup>(7)</sup>

(1)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年 八月條

(2) 同上 太宗 十六年 正月條

(3) 同上 世宗 八年 二月條

(4) 同上 太宗 十六年 十一月條

『壬子冬至 上率百官行向闕賀禮 百官始服 梁冠 中單 裙 蔽膝 繡佩 襪履之服』

(5)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七年 六月條

『禮曹判書卞季良 請禁紅染衣 啓曰 上國使臣迎接之時 請禁之 上曰 紅色非屬上 奈何禁之 昔予即位末久坐於黃綾褥 政丞李舒告曰 坐褥色黃 宜速改之 予聞比言 不覺汗出 紅色則非黃之比也』

(6) 同上 太宗 元年 五月條

『禁黃色于中外』

李朝 太祖代에 와서 黃色의 禁令이 表面化된 것은 黃色을 中國 皇帝의 色이라고 불 뿐만 아니라 高麗 傳來의 君王 服色이기 때문이다.

(7) 同上 太宗 元年 五月條

『禁白色衣服』

白衣는 우리가 上古時代부터 입어 오던 服色인데, 위 白衣에 대한 禁令은 ① 東方은 木, 靑이고 白은 金이니 白紵를 입을 是 『木制金』의 象이라 하여 禁制한다는 說과 ② 白은 喪服이라는 데서 이를 禁制하여

- ㄷ) 灰色<sup>(8)</sup>
- ㄹ) 玉色<sup>(9)</sup>

以上 네 가지 色彩였는데 그것에 다시 紅色이 加하여진 것이다.

禮曹判書인 卞季良이 紅染衣를 禁하자고 주장한 直接動機는 上國使臣을 迎接할 때 이를 입지 말자는데 있었다. 明廷의 使臣 黃儼一行이 六月二九日에 義州에 到着하였던 史實에 비추어<sup>(10)</sup> 우리나라 朝廷에서 이를 前에 主務長官인 禮曹判書가 그와 같은 發議를 낸 것은 時宜에 맞추어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太宗은,

「紅色은 上國과 關聯된 色彩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禁하자고 하는가. 오래 전 내가 即位한지 未久한 때에 黃綾褥에 앉아 있는데 卒한 政丞 李舒가 告하기를 앉아 계신 褥가 黃色이므로 宜當 速히 고치라고 하기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땀이 흐르는 줄도 모를 정도였거니와 紅色은 黃色에 比할 바는 아닌 줄로 아오.」

라고 疑問을 말한 바가 있었다.

그때 이 紅染衣가 實際로 禁止되었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國王의 發言內容으로 보아 施行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紅色이 黃色에 가깝다는

理由만으로도 禁하자는 主張이나 또는 黃色褥을 깔고 앉아 있다가 그것이 黃色임을 말하자 그만 國王이 땀을 흘릴 정도였다는 史實들은 當時爲政人들의 色彩觀을 如實히 알 수 있는 좋은 例라고 생각된다.

上國色인 黃色을 우리나라 支配階級에서 얼마나 尊重하게 여기었는가는 다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禮判 卞季良과 太宗과의 사이에 있었던 發議와 對答 內容은 爲政者의 姿勢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姿勢가 世宗代에 이르러서는 더 한층 徹底化되어 世宗 元年(1419) 正月에 「命禁近黃色衣及庶人團領衣」<sup>(12)</sup>로 深化되었다. 黃色에 가까운 色彩의 衣服을 禁한 것이다. 그리하여 同年 六月에 戶曹에서는 黃色에 가까운 朱紅絲와 進上하는 方物에 朱紅色을 禁한 것이며, 이미 使用中인 朱漆器는 火印을 하여 使用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太宗 十六年에 卞季良이 上啓한 바 있던 紅染衣를 禁止하자는 主張이 不過 3,4年後인 世宗 元年에는 衣服色彩뿐만이 아니고 朱紅色 打印도 禁하는 등<sup>(13)</sup> 進上方物과 漆器의 色彩에까지 黃色에 가까운 모든 色彩는 制限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14)</sup>

이와같은 支配階級の 色彩觀으로 말미암아 全

야 한다는 說이 있다.

世宗은

『傳旨司憲府 自今有職事人員外 勿禁白衣』(世宗 七年 十月條)

라고 하여 官員外의 一般人의 白衣를 容認하고 있다(金東旭著, 韓國服飾史研究, 193, 195頁 參照).

(8) 同上 太宗 二年 三月條

『禁服灰色』

(9) 同上 太宗 十六年 四月條

『復禁玉色衣』

世宗實錄에서는

『禮曹啓 土紅玉色衣服 近於素服 願自今使臣迎接時及大小朝會 不許穿着常時令深染穿着 從之』(同上 世宗 六年十月條)

라고 하여 土紅과 玉色이 素服에 가깝다고 하였다.

(10) 同上 太宗 十七年 六月條

『朝廷內史黃儼海壽 至義州……』

(11) 同上 太宗 十七年 六月條

(12) 同上 世宗 元年 正月條

(13) 同上 世宗 元年 七月條

『中外箋文外 禁用朱紅打印』

(14) 同上 世宗 元年 六月條

『戶曹啓 進上外禁用朱紅鄉絲 可用處禁用唐眞絲 苧有位田加屬令加尺數上納進獻 進上矢筒外禁飾豹尾 且令各官貢豹尾 從之 仍命已成朱漆器着火印用之外方物亦勿用朱紅』

이 黃色에 가까운 色의 하나가 土紅色, 茶割色인데, 이에 대하여 世宗 二十五年 十一月에

『傳旨司憲府 茶割之色 或誤染近於正黃之色 則雖非朝廷使臣所見之處 不可不禁也 其餘茶割入染衣 則朝廷使臣曾見而譏之曰 非中朝朝官所著乃僧人之服也 自此以後迎接使臣之時禁之而已 若曰 非正色則雖本朝行禮之時亦不可服然其可盡禁乎 今後但禁於朝廷使臣所見之處可也 若非文武流品之人 則雖使臣見之亦不可禁也』(同上 世宗 二十五年 十一月條)

體社會에서 色彩의 制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服飾分野로 돌아와서 살펴 보기로 하자.

世宗이 即位한 후 그 最初로 服飾을 學論한 것은 世宗即位年 十一月七日이므로 即位로부터 約三個月餘가 지나서이다. 禮曹에서 上王封崇儀·上王尊號冊寶 등에 관하여 啓한 內容 중에 한마디 指摘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禁制 속에서 官僚의 服色에 관하여서는 元年 七月 十七日에 禮曹의 請으로 朝官에게 常服으로서 藍·紅·黑色衣를 입도록 하였다.<sup>(15)</sup> 이로써 世宗代에 이르러 官僚章服 중 最初로 그 色彩가 分明하여진 것은 常服의 色彩이다. 太宗 때에 紅染色衣를 禁한지 不過 얼마 되지 아니하여 朝官의 常服에 紅色을 許한 것은 矛盾이 아닐 수 없다. 太宗 때보다도 더 한층 色彩의 禁制가 深化되어가는 狀況에서 紅色衣가 許諾되었다는 것은 一種의 矛盾이다. 卽 이와같은 矛盾의 發生은 다시 한번 支配階級의 色彩觀을 把握하는데 좋은 事例가 된다.

色彩의 禁制는 그것이 大體的으로 衣服色의 禁制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身分秩序에 立脚하는 封建的 階級社會의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다. 所謂 事大色인 黃色을 禁하는 나머지 世宗代에 이르러서는 近黃色마저 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朝官의 常服色 중에는 藍色과 黑色, 그리고

紅色을 입도록 한 것은 階級社會의 表象이 되는 官僚章服은 支配階級으로서의 儀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矛盾이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支配階級의 爲政者들이 지닌 當時의 色彩觀은 자연 또는 藝術的인 次元에서의 色彩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階級性에서 나오는 社會的 強制 바로 그것이었다.

### Ⅲ. 支配階級 服飾의 構造

#### 1. 王政統治와 그 表象的 儀章으로서의 冠服

世宗 八年(1426) 二月二七日 禮曹에서는 『朝廷冠服之制』의 完成을 啓하였다.<sup>(16)</sup> 이것은 太宗十六年(1416) 「冠服色」에서 祭服을 制定한지 10年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禮曹는 이 朝廷冠服之制를 完成하는데 「儀禮詳定所」와 더불어 作成하였다고 했다.<sup>(17)</sup> 그리고 보면 이 儀禮詳定所가 設置된 것이 太宗十年(1410)이었으므로 儀禮詳定所로서는 무려 26年이 所要된 셈이다.

그러나 그 結果는 冠服制度를 確定시켰다는 事實에 多少 意義가 있을 뿐이지 內容上으로 보아서는 前代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 없다. 冕服을

라고 하여, 茶割色을 얹게 하면 正黃色이 된다 하고 朝廷使臣이 보는 데서는 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明使가 이를 보고 僧人의 服이라 하였다 하여 使臣 앞에는 禁하되 文武流品의 사람은 禁하지 말라 하였으니 流品들은 많이 茶割色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한편 禁令이 내렸으나 中朝에서 입고 있다고 하여 正黃色 外에는 黃色에 가까운 것은 그대로 許容하라고 司憲府에 啓하여曰,

『司憲府啓 初下令凡近於黃色者 雖非朝廷使臣所見之處 悉令禁斷 然伏聞中 朝大小臣僚除鵝黃色外 皆得穿着 至於僧徒皆着正黃色 乞依此例 正黃色外 其他染近黃色者 皆許穿着 勿令禁斷 從之』(同上 世宗 二十六年 十月條)

라고 하여 黃色에 가까운 衣服은 입게 하였다. 그러나 宮中에서는 黃色 使用이 解弛되었던 것으로 韓確과 金宗瑞에게 다시 黃色의 申禁을 中外에 痛禁하라고 議論하고 있는 것이다.

『庚子 上謂兵曹判書韓確 禮曹判書金宗瑞 右參贊李叔疇曰 高麗恭愍王時僭用十二章之服 凡物皆用黃色 太祖尙未盡革 太宗朝黃色之禁至爲嚴明 載左典章至于今日 官中服飾或用黃色 宮中則革之何難 中外大小男婦黃染衣服 申明痛禁何如 僉曰 令憲府禁斷爲便』(世宗 二十六年 閏七月條)

라고 하여 太祖·太宗·世宗 三代에 걸친 黃色禁止의 苦衷을 말하고 있다.

다시

『戊申 上謂承政院曰 黃色之禁不可不嚴 高麗時乃用黃蓋 僭亂之習因仍未革 至祖宗朝或用黃綾褥 其後漸革 但儀仗有黃色旗 然其旒有雜色 固無嫌乎 抑其質既爲黃色則似涉僭擬宜代以他色乎 其議以啓』(世宗 二十六年 十月條)

라고 하여 高麗時의 黃蓋, 太宗朝의 黃綾褥까지 들어 儀仗의 黃色旗까지 他色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金東旭 著, 韓國服飾史研究, 197頁 引用).

(15) 同上 世宗 元年 七月條

『禮曹啓 朝官於常時 朝會令著黑麻布及苧布藍色紅色黑色衣 從之』

(16) 同上 世宗 八年 二月條

『禮曹啓 曹與儀禮詳定所 謹按朝廷冠服之制……』

(17) 同上.

例로 들어서 말하여 본다면 圭九寸, 冕九旒, 青衣纁裳九章, 白紗中單, 纁色蔽膝, 革帶, 玉佩, 大帶, 白襪, 赤舄로 規定하였는데,<sup>(18)</sup> 이는 高麗朝 恭愍王의 冠服咨文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 八年에 完成을 본 冠服制度의 內容을 살핀다는 것은 中國 明制度和 比較하는데서 그 뜻이 있을 뿐이지 다른 뜻에서 보면 何等의 意義가 없는 것이다. 即 中國皇帝의 旒數는 十二인데 世宗 八年에 禮曹에서 定한 것은 旒가 九이다. 太宗代의 「冠服色」에서 制定한 祭服과 世宗 八年의 制定된 祭服을 比較하여 보자.

(「冠服色」制定의 祭服)(世宗 八年 制定의 祭服)

(一品)革帶用金	同
佩用玉	同
緩用黃綠赤紫四色絲	同
織成雲鶴花錦	(三品)
下結青綠網	同
綬環二用金	(三品)
笏用象牙	同
赤羅衣	同
白紗中單	同
(俱甲青飾)	
赤羅裳青綠	同
赤羅蔽膝	同
大帶用赤白二色絹	同
白襪	同
黑履	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겨우 極少의 部分的인 장식 정도를 달리하여 定하는 일에 그토록 10年의 歲月을 虛費한 理由는 무엇인가.

世宗代에 이르러서 衣制上의 첫번째 登場한 施

策은 服色의 禁制였다. 即 衣服의 色彩는 國家가 命令으로 規定하여 오는 일이므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支配官僚의 章服을 制定하기에 앞서서 禁制부터 나온다는 것은 身分秩序의 社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屢次 指摘하였다.

이와같이 支配階級の 尊嚴한 表象의 하나인 官僚章服色이 確立되어 있는 동안은 被支配階級인 民間人의 服色을 禁制를 통하여 混沌되지 않게 하면 一段은 無事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理由로서 多急한 施策이 아닌 以上 充分한 餘裕가 있는 데서 그만한 歲月이 經過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理由는 官僚章服에 관한 限 中國으로부터 賜與되는 것을 그대로 입어내려오는 일이니만큼 아무 때나 마음대로 고쳐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世宗은 即位 當時부터 歷代王이 다 그러했듯이 더욱 意圖的으로 前王의 것을 물려 받아 입었다. 이 點이 얼마나 強調되었던가를 考察하여 보자.

「……殿下服冕服 乘輿以出」(即位年 八月)<sup>(19)</sup>

「……上具冕服乘輦 率百官諸 上王殿」(即位年 八月)<sup>(20)</sup>

「上冕服 率百官 拜謝恩表如儀」(即位年 九月)<sup>(21)</sup>

「上以冕服入大室裸獻」(即位年 十月)<sup>(22)</sup>

「上以袞冕御仁政殿 奉玉冊金寶」(即位年 十一月)<sup>(23)</sup>

「上以遠遊冠絳紗袍 御仁政殿 百官以朝服序立」(即位年 十一月)<sup>(24)</sup>

「上以冕服 率群臣行望闕禮」(即位年 十一月)<sup>(25)</sup>

「上以冕服 率群臣進賀帝正」(元年 正月)<sup>(26)</sup>

「上以便服 朝臣以朝服 出迎于慕華樓 使臣將至」(元年 正月)<sup>(27)</sup>

「上以冕服 朝臣以朝服 拜表箋于昌德宮如儀」(元年 正月)<sup>(28)</sup>

「上以上王誕辰 冕服率百官諸壽康宮賀」(元年 五月)<sup>(29)</sup>

「上以時服出迎于慕華樓」(元年 八月)<sup>(30)</sup>

(18) 同上

『賜與高麗恭愍王冠服咨文內 冕服……』

(19) 同上 世宗 即位年 八月條

(20) 同上

(21) 同上 世宗 即位年 九月條

(22) 同上 世宗 即位年 十月條

(23) 同上 世宗 即位年 十一月條

(24) 同上

(25) 同上

(26) 同上 世宗 元年 正月條

(27) 同上

(28) 同上

(29) 同上 世宗 元年 五月條

(30) 同上 世宗 元年 八月條

이것은 世宗이 即位하여 滿一年間 重要行事時의 國王服色에 관한 記錄이다. 王廷의 重要行事時에는 君臣의 服色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重視하는 所以인데, 受權國王으로서 冕服을 얼마큼 重視하였는가는 다음의 사실이 如實하게 說明하여 주고 있다. 卽

『上王遣兵曹參判李明德 謂上曰 奏本只稱印章 不敢擅傳 不稱冕服 無乃不可乎其議于政府六曹大臣 上召議之左議政朴崙等議印章重而冕服輕 言印章則冕服在其中 不須枚舉』<sup>(31)</sup>

여기에 「言印章則冕服在其中」이 그것이다. 世宗은 太宗 때 賜與받은 冠服으로 父子二代에 걸쳐 前後 40年間을 입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實情이었으므로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冠服의 새로운 制定에 時日이 그만큼 걸렸다 하여도 何等 問題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리고 禮曹나 儀禮詳定所에서는 冠服의 研究機關을 設立한 以來 日常的으로 不斷히 계속 進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2. 世宗 八年 『冠服之制』를 制定한 動機와 그 實施 如否

世宗 八年(1426)에 制定을 본 『冠服之制』는 前項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太宗 十六年の 「冠服色」 設置로부터 10년이 지난 然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爲政者가 官僚章服에 대하여 지닌 關心의 主된 方向을 바로 前項에서 밝혔다. 그러면 어떠한 動機에서 世宗 八年에 이르러 僚官章服을 새로이 制定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世宗 七年 十二月 二十三日에 世宗이 知申事 郭存中과의 問答內容에서 찾아진다. 卽

「上召代言等 入內啓事 上謂知申事郭存中……前朝恭愍王及我太宗時 皇帝所賜冕服之鳥皆赤 而今冕服之鳥黑 其黑馬 如自何時無乃建文年間 所賜之鳥乎 又恭愍王朝所賜 遠遊冠絳紗袍內有方心曲領 而今不用 其不用者何由且自何時不用乎 此數條議於詳定所提調許稠李

通參考古制以聞」<sup>(32)</sup>

鳥의 色彩가 問題되었던 것이다. 前朝 恭愍王 以來 太宗代까지 中國皇帝가 賜與한 鳥은 그 色彩가 赤色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 色彩가 黑色으로 바뀌어져서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絳紗袍 안에 方心曲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使用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이며 또한 언제부터 使用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아울러 儀禮詳定所의 提調인 許稠, 李通에게 古制를 詳考시키게 한 일이 그것이다. 世宗의 이와 같은 疑問을 들은 知申事 郭存中은 儀禮詳定所에 王旨를 알리었을 것이고 世宗의 뜻을 받은 儀禮詳定所 및 禮曹에서 百官章服의 制式을 制定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冕服·朝服·公服·常服·祭服 등 服制의 種別마다 그것이 어떠한 典據에 立脚한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冠服之制』가 完成된 것이 世宗 八年 二月 二十七日이므로, 世宗이 鳥에 관해 疑問을 提起한 七年(1425) 十二月 二十三日부터 一個月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의 禮曹判書는 申商이었다.

太宗 十六年の 『朝官冠服之制』는 發議로부터 成案이 되기까지 一年餘의 期間을 거쳐서 制定된 데에 比하면 世宗의 『冠服之制』는 위에서 指摘했듯이 一個月餘에 成案되었다.

그리고 太宗 十六년에 『朝官冠服之制』는 成案된 바를 가지고 實際에 製服作業에 所要된 期間은 40日이었다. 그러나 世宗 八年의 경우는 發議에서 制式의 成案까지 一個月餘가 所要되었다는 事實만 알 수 있고, 그 成案에 의하여 製服하였다는 記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太宗代의 경우는 새로 制定한 章服(祭服)을 언제 어느 경우에 着用하였다는 具體的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世宗 八年의 경우는 그것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世宗 八年의 『冠服之制』는 官僚章服의 制度로서 偉儀롭고 莊重하게 文字上 成案을 보았을 뿐, 그것을 實際로 만들어서 着用

(31) 同上 世宗 即位年 九月條

이와 아울러 指摘하여 들 것은 바로 前月인 即位年 八月條에 『以世子禱權署國事 印章冕服不敢擅傳 伏候明降……』를 通하여도 더욱 그러한 것이다.

(32) 世宗 七年 十二月條

하였는지 如否는 明確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記錄上 確실한 實施 如否만이 明記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制度를 애써 成案하여 놓고 無爲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章服을 실제로 만들어서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世宗 八年의 制度란 太宗 十六年의 制度와 別로 차이가 없는 內容이므로 事實上 크게 問題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制度를 成案하여 놓고 그 實施 如否가 分明하지 아니한 理由는 무엇인가?

그 理由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要約된다고 볼 것이다. 즉 첫째, 世宗代에 이르러 官僚章服에 대한 制定을 成案하여 놓고보니 太宗代의 그것과 거의 같아 새로이 變改된 內容이 實際上 없었으므로 日字를 定하여 새로운 章服을 입고 行禮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禮曹와 儀禮詳定所가 共同으로 唐·宋·洪武禮制를 參考하고 더 나아가서는 「杜氏通典」·「文獻通考」·「山堂考索」 및 「大明集禮」를 參照하여 中國官等에 대한 二等遞降을 固守하는 데 거듭 再正確을 期한 것뿐이었으므로 些小한 差

異(太宗時의 一品用이 世宗時에는 三品用으로 바뀐 두 가지 사실)를 가지고 새로운 制度로서 다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結論적으로 叙上한 바를 통하여 世宗의 服飾政策에 관하여 一瞥하면 世宗 八年(1426) 二月에 制定된 『冠服之制』는 世宗의 服飾政策 중 代表的인 業績이 되겠으나, 그 官僚章服의 內容이 明의 制度를 그대로 襲用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이는 世宗이 다른 治績에 있어 獨創的인 國文字 制定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固有文化의 暢達에 至大한 功績이 많음에 反하여 服飾政策面에서 보면 事大思想이 具體化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世宗 二十五年부터 世宗 末期에 이르기까지의 冠服賜與問題를 中心으로 한 그 事大性의 深化過程은 다음 機會로 미룬다.

#### 참 고 문 헌

李朝實錄

韓國服飾史研究(金東旭 著: 亞細亞文化社)

韓國服飾史研究(柳喜卿 著: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韓國史(震檀學會)